강원관광대학 산업체위탁교육 심의위원회 규정

- 제 1 조 (목적) 본 규정은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에 의거 산업체 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- 제 2 조 (구성) 산업체 위탁교육 심의위원장은 학장으로 하고 위원은 산업체 관련 인사 불이상을 위촉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한다.
- 제 3 조 (산업체 위탁교육 심의 위원회의 기능) 산업체 위탁교육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 - ① 위탁의뢰 산업체 적부에 관한 사항
 - ② 위탁생의 선발기준
 - ③ 위탁교육 경비의 부담 및 납부방법
 - ④ 위탁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- ⑤ 산업체의 시설 및 교육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에 관한 사항
 - ⑥ 학교와 산업체 상호 지원에 관한 사항
 - ⑦ 기타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
- 제 4 조 (회의소집) 산업체 위탁교육 심의위원회의는 주무부서의 요청이 있을 때,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제 5 조 (의사 및 의결정족수)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6 조 (회의록)

- ① 산업체 위탁교육 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산업체 위탁교육 심의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.
- 제 7 조 (운영세칙) 이 규정에 불비된 운영세칙은 산업체 위탁교육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3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.